

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·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25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9. .
제 출 자 : 성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어린이·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어린이·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린이·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위원의 임기 및 해촉(안 제5조 ~ 제6조)
- 라.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(안 제7조 ~ 제9조)
- 마. 위원회의 의견수렴, 경비 및 표창(안 제10조 ~ 제12조)
- 바. 위원회의 업무위탁 및 권리와 의무(안 제13조 ~ 제14조)
- 사. 운영규칙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1)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
- 2)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)

나. 예산조치: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8. 8. 9. ~ 8. 2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 또는 강화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·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어린이·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어린이·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어린이·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”란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청소년”이란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어린이·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 의견 수렴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참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각각 둔다.

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어린이·청소년 정책 및 시설 전반에 관한 의견제시, 평가와 제안
2.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
3.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
4. 그 밖에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활동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, 성별, 연령별로 어린이·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구성한다.

1.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·청소년
2.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·청소년으로서 구 관할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
제5조(위원의 임기 및 사퇴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하는 것으로 본다.

1.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. 다만, 구 관할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.
2.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구 관할구역 외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

제6조(위원의 해촉)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

2.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% 미만인 자
3.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된 경우
4.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‘특별한 사유’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천재지변
2. 학교시험
3. 본인 질병과 사고
4.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(2촌 이내)의 상(喪) 또는 결혼
5.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한다.

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
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3.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분과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운영·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제10조(의견 수렴 및 반영)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
1. 어린이·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위원회 의견 수렴

2. 어린이·청소년 관련 정책 추진 시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 반영

제11조(경비 등)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표창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표창할 수 있다.

1. 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

2. 구의 명예를 높이는 활동을 한 위원

제13조(업무의 위탁) 구청장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위원회 운영에

관한 업무를 구 관할구역 내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제14조(권리와 의무)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
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제15조(운영규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
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·운영중인
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참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참
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·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어린이·청소년 참여위원회 경비 등(안 제11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연평균 1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비용추계서 생략

4. 작성자

- 성동구 아동청년과 사회7급 김명선(연락처 2286-5482)

< 관 계 법 규 >

□ 청소년기본법

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·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·협의·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·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2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[전문개정 2014. 3. 24.]

□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
제4조(기본계획수립 등)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·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0. 25.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: 2018. 9. 21. / 성동구청장
- 나. 회부일자: 2018. 9. 27.
- 다. 상정일자: 2018. 10. 23.

(제24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)

2. 제안개요

- 가. 제안설명: 주민생활국장
- 나. 제안이유

어린이·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어린이·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린이·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위원의 임기 및 해촉(안 제5조 ~ 제6조)

- 라.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(안 제7조 ~ 제9조)
- 마. 위원회의 의견수렴, 수당 및 표창(안 제10조 ~ 제12조)
- 바. 위원회의 업무위탁 및 권리와 의무(안 제13조 ~ 제14조)
- 사. 운영규칙 (안 제1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1)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
- 2)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
(기본계획 수립 등)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8. 8. 9. ~ 8. 2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.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 또는 강화규제 없음.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.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린이참여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15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○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,

안 제1조 ~ 제2조에서는

-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,

안 제3조 ~ 제4조에서는

-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.

안 제5조 ~ 제7조에서는

- 위원의 임기 및 사퇴, 해촉,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였으며,

안 제8조 ~ 제9조에서는

- 회의, 분과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을 규정하였고

안 제13조 ~ 제15조에서는

- 업무의 위탁, 권리와 의무, 운영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.

- 성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15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청소년참여위원 18인으로 구성된 4기가 활동 중이고, 성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, 대외협력부·지역홍보부·정책추진부 등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성동구 어린이참여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어린이들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의 통로를 마련하고자 2018년 7월 13일 발대식을 갖고 어린이참여위원 29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
- 어린이참여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청소년참여위원회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5조의2에 근거를 두고 기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,

-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내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,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, 어린이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 되려면 각 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, 각 위원회의 의견이 어린이·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조.

7. 토론요지: 없음.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.